

의안번호	2221397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6. 10. 7.
추 계 번호	26B4838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를 구성하고,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억 2,000만원(연평균 6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평균
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 (안 제7조의3)	60	60	60	60	60	300	60
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 등 (안 제7조의4)	4	4	4	4	4	20	4
추가재정소요	64	64	64	64	64	320	64

주: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별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의 수행 여부 및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(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·분석·제공하고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3(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)	산림청장은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조경수 생산자·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(제2항)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3	안 제7조의4(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 등)	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제3항)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2. 조경수 생산·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	의무규정
4	안 제29조의4(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)	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제4항) 1.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·유통정보에 관한 지원 2.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 3.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거래가격의 조사·분석, 가격정보 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제공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의2(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×	·미첨부 제3호 -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여부 및 방식, 수집·관리·분석·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시스템의 규모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예측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7조의3(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)	○	·산림청 의견 및 유사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7조의4(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 등)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29조의4(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)	×	·미첨부 제3호 －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에 관한 지원,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, 조정수의 생산·유통 및 거래가격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사업 수행 범위 및 방식, 정보시스템의 운영 규모, 조사·분석 및 정보제공의 대상·범위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예측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조정수 생산 및 유통 가격 정보 관련 실태조사 (안 제7조의3)
-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정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가격 정보의 제공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본 추계에서는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
 - 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‘2025년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’ 연구용역에 6,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, 조정수 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실태조사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수행기관	계약 금액	주요내용
2025년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	(주) 롤로랜드	60	·수입농산물 유통주체별 조사방안 수립 및 조사 방법 설계 ·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 ·수입농산물 품목별 유통실태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·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자문단 구성 및 조사 결과 검증

자료: 나라장터

-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- 개정안에 따라 작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억원(연평균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 (안 제7조의3)	60	60	60	60	60	300	60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 설치(안 제10조의4)
 -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,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 수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횟수, 참석수당 등을 산정하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

- **(위원 수)**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정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의 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회 최대 정원의 절반인 5명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**(회의개최 횟수)**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심의 사항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를 준용하고, 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로 가정함
 - 본 추계에서는 심의 사항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로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7¹⁾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함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분기당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로 가정함
- **(회의참석 사례금)**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(참석수당 20만원²⁾)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1) 제5조의7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.
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
 2.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 3.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·판매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.
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 1.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 2.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
 3.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
 4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2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,000만원(연평균 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8~2032년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5	5	5	5	5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4	4	4	4	4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4	4	4	4	4	20	4

주: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별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의 수행 여부 및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